

[별표 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제4-1조관련)<개정 2011.3.22, 2013.10.30, 2015.12.29., 2016.3.30., 2017.9.1., 2019.12.20., 2022.6.27., 2022.12.23.>

1. 재무상태표(개별(별도)재무제표)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 및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한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정한 금액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투자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주식 등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파생상품자산
(기타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의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자산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I. 운용자산	
1. 현금및예치금	
가. 현금과예금	

(1) 현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인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기타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증서 등
(2) 당좌예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예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3) 보통예금	예금거래의 대상금액, 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정기예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
(5) 정기적금	만기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
(6) 해외제예금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7) 기타예금	상기이외의 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당좌개설보증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어음관리구좌(CMA), 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나. 금전신탁	신탁을 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예입하는 금액
다. 선물거래예치금	선물거래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라. 기타예치금	상기이외의 예치금
2. 유가증권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출자금 포함)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중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사.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 자증권 및 수익증권 - 공사채형 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4) 신용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 되지 않은 채무증권 및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최초 인식시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한 지분증권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 기금 출자금 포함)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사.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4)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정한 금액
(손실충당금)	향후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가.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나.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다. 금융채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라.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마.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집합투자증권및개발신탁수익증권등
바.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1) 채권	외화표시 채권
(2)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3) 신용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4)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사.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투자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주식 등
[종속기업투자자산]	투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가. 주식	보험회사가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나. 출자금	보험회사가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금
다. 기타	상기 이외의 관계·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3. 대출채권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채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대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향후 대출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대출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연처리한 금액
가. 콜론	콜거래를 통한 대출채권
나.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다. 부동산담보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라. 신용대출금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
마. 어음할인대출금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1)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2) 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3) 기타	상기 이외의 어음할인대출금
바. 지급보증대출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사. 기타대출금	상기이외의 대출채권 -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CP,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등
(1) 사모사채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발행증권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채
(2) C P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3)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계약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금액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채권
4. 부동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손상차손누계액)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위하여 소유자가 보

	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투자부동산 (토지)	투자부동산 중 토지
- 투자부동산 (건물)	투자부동산 중 건물
- 투자부동산 (해외부동산)	투자부동산 중 해외부동산
- 투자부동산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투자부동산
가.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 및 개량비 -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토지 매입원가에 가산
나. 건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조명·통풍·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부대시설비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비 총액
다. 구축물	교량·안벽·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총액
라.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감가상각누계액)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1) 토지	해외부동산 중 토지
(2) 건물	해외부동산 중 건물
(3) 구축물	해외부동산 중 구축물
(4) 건설중인자산	해외부동산 중 건설중인 자산
마. 건설중인자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당해 건설의 목적으로 충당한 도급금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 등
바. 기타부동산	상기이외의 부동산
(감가상각누계액)	기타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II. 비운용자산	
1. 보험계약자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해 갖게 되는 순계약상 권리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권리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보장요소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권리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누계액)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2. 재보험계약자산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계약자가 갖게 되는 순계약상권리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권리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금액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권리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미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4. 보증금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 전신전화가입권, 예탁보증금, 공탁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보증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가. 공탁금	채무이행의 의무면제 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법원에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나. 예약보증금	임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해 예치시켜놓은 금액
다. 임차보증금	건물, 토지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라. 기타보증금	상기 이외의 보증금
5.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금액으로서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 -미수이자(예금,대출채권,유가증권등),미수임대료,미수배당금등
(대손충당금)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6. 선급비용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 될 금액
7. 선급법인세	기중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나 중간예납한 법인세
8.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
9.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가. 일반선급금	일반 목적의 선급금
나. 부동산매입선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선급금
10. 가지급금	귀속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지급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가계정
(대손충당금)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가. 일반가지급금	일반 목적의 가지급금
나. 부동산매입가지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11.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지급하는 일시적인 보험금 및 미정리보험금
12.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3.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총액
14. 비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비 총액
15. 임차점포시설물	점포임차시 자산성이 있는 시설물 투자액
(감가상각누계액)	임차점포시설물 감가상각비 총액
16. 기타의유형자산	상기 이외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17. 이연법인세자산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18. 파생상품자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해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19.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가. 영업권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나. 소프트웨어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개발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라. 기타의무형자산	상기 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0.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가. 받을어음	상거래(보험영업, 투자영업 및 기타상거래를 말함)에서 수취한 상업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
나. 부도어음	받을어음 중 지급기일에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
21. 순확정급여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22. 기타의비운용자산	상기 이외의 비운용자산
III.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특별계정미지급금-실적배당형퇴직연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특별계정미지급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부채>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보험계약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의 금융부채를 제외한 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부채)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부채의 집합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게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I. 책임준비금	
1.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순계약상 의무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가평가 금액
[계약자배당부채]	유배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래 계약자 배당액
-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보증부채]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증 관련 요소(보증수수료, 보증손실 등)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선추정에서 보증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최선추정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선추정금액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보험계약마진 (4)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요소
나. 발생사고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2.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가. 잔여보장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보험계약마진 (4)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요소
나. 발생사고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II. 계약자지분조정	보험사의 미실현평가손익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 공익사업출연기금	중 부채에 반영된 미래 계약자배당을 제외한 금액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평가손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 하여 적립한 금액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 재평가적립금	관계, 종속기업 투자주식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 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
5. 재평가잉여금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 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계 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III. 기타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 하여 최초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1. 미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2. 미지급비용	당기 말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
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등의 미지급금액
4.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
5. 차입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콜머니, RP매도 등
가. 콜머니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의 차입금
나. RP매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 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한 방식의 환매조건부 채권
다. 후순위차입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
라. 기업어음의발행	보험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
마.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6. 사채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채권
가. 후순위채권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후 순위인 채권
나.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사채
7. 선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
8. 선수수익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중 당기에 속하지 않은 차기 이후의 수익 - 선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
9. 예수금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 징수한 세금 등

	- 원천세(갑근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개인연금추징세, 보험차익원천세, 농특세, 채권이자보유기간원천세, 실명전환과징금) 및 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금(임대보증금 제외) 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건물, 토지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미래 퇴사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아직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익 아직 인식되지 않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 적립된 자산으로 장기 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적립된 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 이외에 적립된 자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10. 미지급부가세	
11. 가수금	
12. 가수보험료	
13. 본지점계정대	
14. 이연법인세부채	
15. 임대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16. 순확정급여채무	
가. 확정급여채무	
나.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라. 사외적립자산	
(1) 퇴직연금운용자산	
(2) 기타사외적립자산	
17.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	
[헤지목적파생상품]	
가. 이자율관련	
나. 통화관련	
다. 주식관련	
라. 신용관련	
마. 기타	

18. 신탁계정차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하는 금액
19. 복구충당부채	점포시설물을 임차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함에 따라 사용기간 종료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20. 채무보증충당부채	상대방의 채무보증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21. 요구불상환지분	보유자의 상환 요구 시 상환이 강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금융 부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
가. 상환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나. 기타	상기 이외의 요구불상환지분
22. 지급어음	상거래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
23. 그밖의기타부채	상기 이외의 기타부채
IV.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특별계정미수금-실적배당형퇴직연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특별계정미수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자본>	
I. 자본금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
[수권주식수]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발행주식수]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
1. 보통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발행보통주식수]	보통주로 발행한 주식 수
2. 우선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중 보통주를 제외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요구불상환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발행우선주식수]	우선주로 발행한 주식 수
II. 자본잉여금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3.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중 99.3.31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유보액 및

4. 기타자본잉여금	99.4.1이후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주주지분 해당액 상기 이외의 자본잉여금
III. 신종자본증권	보험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할증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V. 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내에 유보된 금액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이상을 적립하는 금액
2. 기타법정적립금	법으로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적립금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또 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의무 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대손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최소적립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차액
4.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중 법정준비금 이외에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적립된 금액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전 금액 (결손금 처리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 전 금액)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6. 해약환급금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7. 보증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8.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법 120조에 따라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
V. 자본조정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3. 기타자본조정	상기이외의 자본조정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손실충당금	향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시 관계·종속기업의 자본항목 변동금액 중 투자회사의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시에는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실 중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 금액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 금액
8. 재평가잉여금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9. 보험수리적손익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10.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포괄손익계산서 (개별(별도)재무제표)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I. 보험손익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기타사업비용
1. 보험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1-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수익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가. 예상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나. 예상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예상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라. 예상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마. 위험조정변동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바. 보험계약마진상각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아. 손실요소 배분액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1) 최선추정 수익인식 배분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2) 위험조정 수익인식 배분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자. 기타보험수익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상기 이외의 보험수익
(2)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
(3) 기타	보험료 수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
1-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수익
2.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간경과기준 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한 경우 이를 조정한 금액)
2-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발생보험금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다. 발생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라. 발생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마.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바. 발생사고요소조정	손실요소 배분액을 제외한 손실요소의 증감분에 당기에 신규로 발생한 손실요소를 가산한 금액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아. 손실요소 배분액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자. 기타보험서비스비용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상기 이외의 보험서비스비용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서비스비용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	보험취득현금흐름이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 유입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보험서비스비용
2-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발생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조사비
다.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손실의 발생이나 변동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즉시인식액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바.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사. 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3. 재보험수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3-1.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가. 발생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된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회수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는 손해조사비로,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금액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바.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3-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

가. 발생재보험금	협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한 손해조사비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마.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4. 재보험서비스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4-1.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가. 예상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나. 예상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손해조사비로,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위험조정변동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손실회수요소배분액 차감 전)
라. 보험계약마진상각	재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마진 중 당기에 상각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최선추정부채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2) 위험조정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바.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재보험서비스비용
(1) 재보험료 경험조정	재보험료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재보험서비스비용
(2)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5. 기타사업비용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사업비
II. 투자손익	투자수익-투자비용
1. 투자수익	
가. 보험금융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1) 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수익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익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수익
나. 이자수익	
(1) 예금이자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이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5) 대출채권이자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 포함)
(6) 기타이자수익	상기 이외의 이자수익 (부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이자 등)
다. 배당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배당수익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관계·종속기업 투자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4) 기타배당수익	상기 이외의 배당수익
라. 임대료수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주차장 수입 등)
마. 수수료수익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 (유가증권 인수단 참여 수수료, 주식대여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바. 금융상품처분이익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4) 대출채권처분이익	초과하는 금액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 금융상품재분류이익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이익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 금액
①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 금액
②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 금액
③ 기타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 금액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① 차입부채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②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③ 기타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자. 금전신탁이익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수익 등
차.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1) 대손충당금환입	직전사업년도까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당기말에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2)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한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3) 파생상품손상차손환입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손상된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비금융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1) 부동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3) 기타	상기 이외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파.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하. 파생상품거래이익	지분에 속하는 금액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1) 이자율관련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2) 통화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3) 주식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4) 신용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5) 기타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거. 파생상품평가이익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1) 이자율관련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2) 통화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3) 주식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4) 신용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5) 기타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너. 외환차익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더. 외화환산이익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러. 부동산처분이익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투자부동산처분이익]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머. 재평가손실환입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버. 신탁보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환입
서. 금융부채상환이익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
(1) 발행채권	금융부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2) 요구불상환지분	발행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이 장
(3) 기타	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어. 염가매수차익	요구불상환지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저. 기타투자수익	상기 이외의 금융부채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2. 투자비용	화폐성자산을 염가구매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에 대해 즉시
가. 보험금융비용	인식하는 이익
(1) 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상기 이외의 투자수익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② 환율변동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③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비용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② 환율변동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③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비용
나. 이자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1) 당좌차월이자	당좌차월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2) 차입금이자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① 콜머니이자	콜머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② RP매도이자	RP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③ 후순위차입금이자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④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이자비용
(3) 발행채권이자	발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4) 신탁계정차이자	신탁계정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5) 요구불상환증권이자	요구상환불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6) 리스부채이자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7) 기타이자비용	상기 이외의 기타 이자비용
다. 재산관리비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집합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라. 부동산관리비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중 임대부분 해당액
마. 지분법평가손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바. 금융상품처분손실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 손실	중개수수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장외채권중개수수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 손실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5) 대출채권처분손실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사. 금융상품재분류손실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손실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①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②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③ 기타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① 차입부채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②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③ 기타	상기 이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자. 금전신탁손실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손실
차. 금융상품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융상품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1) 대손상각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9호의 손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2) 유가증권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각후원가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3) 파생상품손상차손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1) 부동산손상차손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2)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3) 기타	상기 이외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파.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하.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거. 외환차손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손
너. 외화환산손실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더. 부동산처분손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투자부동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러. 재평가손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머. 부동산감가상각비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중 임대 부분 해당액
버.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서.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어. 금융부채상환손실	금융부채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1) 발행채권	발행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부채상환손실
저. 기타투자비용	상기 이외의 투자비용
III. 영업이익(또는영업손실)	
IV. 영업외손익	
1. 영업외수익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차량운반구,비품,기타의유형자산처분이익)
나.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이익 금액
다. 외환차익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중 투자손 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라.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 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마. 자산수증이익	회사의 누적된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임원 등 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은 금액
바.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영업상의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
사. 보험차익	자산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아. 잡이익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익
2. 영업외비용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차량운반구,비품,기타의유형자산처분손실)
나. 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
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
라. 외환차손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 중 투자손 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마.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바.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 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사. 과징금·과태료·벌과금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아. 잡손실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비용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VI. 법인세비용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
VII.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후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금액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액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추가적립액
(보증준비금 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보증준비금 추가적립액

(대손준비금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후 당기순이익) VIII. 기타포괄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지분상품평가손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3.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 할인율 변경효과 (2) 환율 변경효과 (3) 기타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 할인율 변경효과 (2) 환율 변경효과 (3) 기타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6. 해외사업환산손익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8. 재평가잉여금 9. 보험수리적손익 10. 기타 IX. 총포괄손익	당해 결산기간 중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액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결산기간 중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당기 변동 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 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중 당기 변동 금액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손상금액의 당기 변동분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상기 이외의 보험계약집합 순금융손익 보유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상기 이외의 재보험계약집합 순금융손익 관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평가시 관계, 종속기업의 자본항목 변동금액 중 당기 변동 금액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당기 변동금액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연금 부채의 변동 금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	--

3. 연결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 및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한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정한 금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주식 등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파생상품자산
(기타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의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자산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I. 운용자산	
1. 현금및예치금	
가. 현금과예금	
(1) 현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인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기타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증서 등
(2) 당좌예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예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3) 보통예금	예금거래의 대상금액, 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

	로운 예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 만기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상기이외의 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당좌개설보증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어음 관리구좌(CMA), 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4) 정기예금	
(5) 정기적금	
(6) 해외제예금	
(7) 기타예금	
나. 금전신탁	신탁을 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예입하는 금액
다. 선물거래예치금	선물거래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라. 기타예치금	상기이외의 예치금
2.유가증권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출자금 포함)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다. 국·공채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1) 국채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집합 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1) 보증사채	
(2) 무보증사채	
사. 수익증권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4) 신용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무증권 및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최초 인식시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한 지분증권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출자금 포함)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바. 회사채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1) 보증사채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사. 수익증권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1) 주식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2) 채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주식
(4)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채권
(5) 기타유가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자. 기타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손실충당금)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가. 국·공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〇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정한 금액
나. 특수채	향후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1) 국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2) 공채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다. 금융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나. 특수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다. 금융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나. 특수채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다.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라. 회사채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중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마.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바.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1) 채권	외화표시 채권
(2)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3)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4)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사.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가. 주식	보험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나. 출자금	보험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금
다. 기타	상기 이외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3. 대출채권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채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대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향후 대출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대출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연처리한 금액
가. 콜론	콜거래를 통한 대출채권
나.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다. 부동산담보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라. 신용대출금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
마. 어음할인대출금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1)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2) 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3) 기타	상기 이외의 어음할인대출금
바. 지급보증대출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사. 기타대출금	상기이외의 대출채권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CP,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등
(1) 사모사채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발행증권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채
(2) C P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3)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계약 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금액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채권
4. 부동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손상차손누계액)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투자부동산 (토지)	투자부동산 중 토지
- 투자부동산 (건물)	투자부동산 중 건물
- 투자부동산 (해외부동산)	투자부동산 중 해외부동산
- 투자부동산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투자부동산
가.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

	비용 및 개량비 -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토지 매입원가에 가산
나. 건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조명·통풍·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부대시설비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비 총액
다. 구축물	교량·안벽·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총액
라.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감가상각누계액)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1) 토지	해외부동산 중 토지
(2) 건물	해외부동산 중 건물
(3) 구축물	해외부동산 중 구축물
(4) 건설중인자산	해외부동산 중 건설중인 자산
마. 건설중인자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당해 건설의 목적으로 충당한 도급금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 등
바. 기타부동산	상기이외의 부동산
(감가상각누계액)	기타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II. 비운용자산	
1. 보험계약자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해 갖게 되는 순계약상 권리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권리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요소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권리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누계액)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2. 재보험계약자산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계약자가 갖게 되는 순계약상 권리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권리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금액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권리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미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4. 보증금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 전신전화가입권, 예탁보증금, 공탁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현재가치할인차금)	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보증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가. 공탁금	채무이행의 의무면제 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법원에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나. 예약보증금	임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해 예치시켜놓은 금액

다. 임차보증금	건물, 토지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라. 기타보증금	상기 이외의 보증금
5.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금액으로서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
(대손충당금)	-미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미수임대료, 미수배당금 등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6. 선급비용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될 금액
7. 선급법인세	기중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나 중간예납한 법인세
8.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
9.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가. 일반선급금	일반 목적의 선급금
나. 부동산매입선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선급금
10. 가지급금	귀속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지급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가계정
(대손충당금)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가. 일반가지급금	일반 목적의 가지급금
나. 부동산매입가지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11.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지급하는 일시적인 보험금 및 미정리보험금
12.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3.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총액
14. 비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비 총액
15. 임차점포시설물	점포임차시 자산성이 있는 시설물 투자액
(감가상각누계액)	임차점포시설물 감가상각비 총액
16. 기타의유형자산	상기 이외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17. 이연법인세자산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18. 파생상품자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헤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19.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가. 영업권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나. 소프트웨어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개발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라. 기타의무형자산	상기 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0.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가. 받을어음	상거래(보험영업, 투자영업 및 기타상거래를 말함)에서 수취한 상업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
나. 부도어음	받을어음 중 지급기일에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
21. 순확정급여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22. 기타의비운용자산	상기 이외의 비운용자산
III.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특별계정미지급금-실적배당형퇴직연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특별계정미지급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부 채>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측정한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보험계약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의 금융부채를 제외한 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부채)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부채의 집합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게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I. 책임준비금	
1.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순계약상 의무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가평가 금액
[계약자배당부채]	유배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래 계약자 배당액
-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보증부채]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증 관련 요소(보증수수료, 보증손실 등)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선추정에서 보증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최선추정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선추정금액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요소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2.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 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요소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II. 계약자지분조정	보험사의 미실현평가손익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부채에 반영된 미래 계약자배당을 제외한 금액
1. 공익사업출연기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 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5. 재평가잉여금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III. 기타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1. 미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2. 미지급비용	당기말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
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등의 미지급금액
4.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
5. 차입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콜머니, RP매도 등
가. 콜머니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의 차입금
나. RP매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한 방식의 환매조건부 채권
다. 후순위차입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
라. 기업어음의발행	보험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
마.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6. 사채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채권
가. 후순위채권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
나.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사채
7. 선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
8. 선수수익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중 당기에 속하지 않은 차기 이후의 수익 - 선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징수한 세금 등
9. 예수금	-원천세(갑근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개인연금추징세, 보험차익원천세, 농특세, 채권이자보유기간원천세, 실명전환과징금) 및 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금(임대보증금 제외) 등
10. 미지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11. 가수금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12. 가수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
13. 본지점계정대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4. 이연법인세부채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15. 임대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건물, 토지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16. 순확정급여채무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미래 퇴사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
가. 확정급여채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나.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아직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익
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아직 인식되지 않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라.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 적립된 자산으로 장기 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
(1) 퇴직연금운용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적립된 자산
(2) 기타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 이외에 적립된 자산
17. 파생상품부채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헤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18. 신탁계정차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하는 금액
19. 복구충당부채	점포시설물을 임차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함에 따라 사용기간 종료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20. 채무보증충당부채	상대방의 채무보증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21. 요구불상환지분	보유자의 상환 요구 시 상환이 강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금융 부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
가. 상환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나. 기타	상기 이외의 요구불상환지분
22. 지급어음	상거래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
23. 그밖의기타부채	상기 이외의 기타부채
IV.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게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특별계정미수금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특별계정미수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자 본>	
I. 자본금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
1. 보통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2. 우선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중 보통주를 제외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요구불상환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II.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실체의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중 지배회사 지분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3.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중 99.3.31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유보액 및 99.4.1 이후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주주지분 해당액
4. 기타자본잉여금	상기 이외의 자본잉여금
III. 신종자본증권	보험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할증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V. 연결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연결실체 내 유보된 금액 중 지배회사지분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이상을 적립하는 금액
2. 기타법정적립금	법으로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적립금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대손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최소적립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차액
4.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중 법정준비금 이외에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적립된 금액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전 금액 (결손금 처리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 전 금액)
(지배회사지분 연결순손익)	(연결손익계산서 상의 지배회사지분 연결당기순손익)
6. 해약환급금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7. 보증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8.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법 120조에 따라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
V. 연결자본조정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중 지배회사 지분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3. 기타자본조정	상기이외의 자본조정
VI.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손실충당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5.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6. 해외사업환산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관계회사의 자본항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중 투자회사의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실 중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 금액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8. 재평가잉여금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 금액
9. 보험수리적손익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10. 기타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VII. 비지배지분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부채와자본총계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본

4.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I. 보험손익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기타사업비용
1. 보험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1-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수익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가. 예상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나. 예상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예상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라. 예상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마. 위험조정변동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손실요소배분액 차감 전)
바. 보험계약마진상각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최선추정 수익인식 배분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2) 위험조정 수익인식 배분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자. 기타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보험수익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
(2)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보험료 수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수익
1-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간경과기준 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한 경우 이를 조정한 금액)
2.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서비스비용	발생한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발생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추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추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발생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추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라. 발생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추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마.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손실요소 배분액을 제외한 손실요소의 증감분에 당기에 신규로 발생한 손실요소를 가산한 금액
바. 발생사고요소조정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자. 기타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보험서비스비용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서비스비용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 (환입)	보험취득현금흐름이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 유입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보험서비스비용
2-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 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발생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조사비
다.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손실의 발생이나 변동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즉시인식액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바.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사. 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3. 재보험수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3-1.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가. 발생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된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회수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는 손해조사비로,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금액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바.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3-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가. 발생재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한 손해조사비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마.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4. 재보험서비스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4-1.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가. 예상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할

나. 예상손해조사비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다. 위험조정변동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손실회수요소배분액 차감 전)
라. 보험계약마진상각	재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마진 중 당기에 상각되어 재보험서비스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최선추정부채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2) 위험조정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바.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재보험서비스비용
(1) 재보험료 경험조정	재보험료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재보험서비스비용
(2)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 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 서비스비용
5. 기타사업비용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사업비
II. 투자손익	투자수익-투자비용
1. 투자수익	
가. 보험금융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1) 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수익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익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수익
나. 이자수익	
(1) 예금이자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이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증권이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5) 대출채권이자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 포함)
(6) 기타이자수익	상기 이외의 이자수익 (부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이자 등)
다. 배당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증권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3) 기타배당수익	상기 이외의 배당수익
라. 임대료수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주차장 수입 등)
마. 수수료수익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 (유가증권 인수단 참여 수수료, 주식대여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바. 금융상품처분이익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증권처분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대출채권처분이익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하는 금액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하는 금액
사. 금융상품재분류이익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이익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하는 금액
자. 금전신탁이익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수익 등
차.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1) 대손충당금환입	직전사업년도까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당기말에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2)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된 유가증권에서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3) 파생상품손상차손환입 (4) 기타 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1) 부동산손상차손환입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 기타 파. 지분법평가이익 하. 파생상품거래이익 거. 파생상품평가이익 너. 외환차익 더. 외화환산이익 러. 부동산처분이익 [투자부동산처분이익] 머. 재평가손실환입 버. 신탁보수 서. 금융부채상환이익 어. 염가매수차익 저. 기타투자수익 2. 투자비용 가. 보험금융비용 (1) 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② 환율변동비용 ③ 할인율변동비용 ④ 기타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측정된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측정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손상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 손상된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비금융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손상된 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손상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상기 이외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환입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 금융부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화폐성자산을 염가구매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에 대해 즉시 인식하는 이익 상기 이외의 투자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비용
--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② 환율변동비용

③ 할인율변동비용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⑤ 기타

나. 이자비용

(1) 당좌차월이자

(2) 차입금이자

① 콜머니이자

② RP매도이자

③ 후순위차입금이자

④ 기타

(3) 발행채권이자

(4) 신탁계정차이자

(5) 요구불상환증권이자

(6) 리스부채이자

(7) 기타이자비용

다. 재산관리비

라. 부동산관리비

마. 지분법평가손실

바. 금융상품처분손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실

(장외채권중개수수료)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증권처분손실

(장외채권중개수수료)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
손실

(장외채권중개수수료)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
으로 인식하는 금액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
생하는 금융비용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당좌차월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콜머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RP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기 이외의 차입금 이자비용

발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신탁계정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요구상환불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상기 이외의 기타 이자비용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집합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중 임대부분 해당액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속하는 금액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하는 금액

(5) 대출채권처분손실

(6) 기타

사. 금융상품재분류손실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
채평가손실

자. 금전신탁손실

차. 금융상품손상차손

(1) 대손상각비

(2) 유가증권손상차손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손상차손

(3) 파생상품손상차손

(4) 기타

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

(1) 부동산손상차손

(2) 무형자산손상차손

(3) 기타

파. 파생상품거래손실

하. 파생상품평가손실

거. 외환차손

너. 외화환산손실

더. 부동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처분손실]

러. 재평가손실

머. 부동산감가상각비

버. 무형자산상각비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하는 금액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
하는 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
과한 금액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손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융상품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9호의 손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각후원가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
손실의 변동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무형
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상기 이외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손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중 임대 부분 해당액
무형자산의 상각비

서.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어. 금융부채상환손실 저. 기타투자비용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금융부채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기 이외의 투자비용
III. 기타영업손익	
1. 기타영업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1) 용역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용역수익
(2) 상품판매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상품판매수익
(3) 기타영업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그이외 영업수익
2. 기타영업비용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영업비용
(1) 용역원가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용역원가
(2) 상품판매원가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상품판매원가
(3) 판매관리비	보험업외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4) 기타영업비용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그이외 영업비용
IV.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영업손익
V.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1. 영업외수익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이익 금액
다. 외환차익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라.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마. 자산수증이익	회사의 누적된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임원 등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은 금액
바.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영업상의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
사. 보험차익	자산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아. 잡이익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익
2. 영업외비용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나. 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
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
라. 외환차손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마.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바.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사. 과징금·과태료·벌과금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아. 잡손실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비용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
VII.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법인세비용
VIII.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법인세차감후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금액
IX. 비지배지분순이익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
X. 지배회사지분 연결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XI. 기타포괄손익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당기 변동 금액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 금액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중 당기 변동 금액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 상품손실충당금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손상금액의 당기 변동분
3.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보유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5.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적 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관계회사의 자본항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중 당기 변동액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8. 재평가잉여금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당기 변동금액
9.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연금 부채의 변동 금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10.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XII.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
XIII.연결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XIV. 연결총포괄손익	지배회사지분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합계액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여 비 교 통 비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통 신 비	통신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수 도 광 열 비	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세 금 과 공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국민연금 등
소 모 품 비	사무용품등 소모성 물품비
도 서 신 문 비	업무상 필요한 도서, 신문 구입 및 발간비 등
회 의 비	각종 회의비용 등
지 급 임 차 료	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고 지급한 임차료 및 사용료
감 가 상 각 비	보험영업과 관련된 상각자산 감가상각비
수 선 비	건물 등의 파손·고장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비용
차 량 유 지 비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보조금 포함)
보 험 료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수 수 료	회계감사보수, 세무조정보수, 사법서사보수 등
접 대 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접대성 제경비
인 쇄 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광 고 선 전 비	회사의 광고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제비용
조 사 연 구 비	업무와 관련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행 사 비	창립기념일, 주주총회 등 사내외의 각종 행사시 지출되는 제비용
체 육 진 흥 비	임·직원의 체력단련에 지출되는 비용
교 육 훈 련 비	임·직원 및 보험판매요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전 산 비	전산관련 제유지비용
보험사고예방비	보험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
협 회 비	보험관련협회등에 지급된 회비(보험관련협회에 지급한 공동보험 인수 수수료를 제외한다)
대 손 상 각 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잡 급 여	임시고용인 및 월급제 고문에게 지급한 금액
잡 비	일반관리비중 상기 각 계정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비용
비 레 수 당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의 제2회 이후 보험료와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
점 포 운 영 비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의 제2회 이후 보험료와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부표 2>

신계약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정과목	과목해설
일반신계약비	일반손해보험의 대리점 이외 판매채널과 관련
비례수당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점포운영비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업무추진비
장기신계약비	장기손해보험의 대리점 이외 판매채널과 관련
비례수당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
점포운영비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촉진비
진단비	신계약 모집에 따른 계약자의 건강조사 제비용
인쇄비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
광고선전비	신계약과 관련된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교육훈련비	신계약 모집에 대한 점포관리자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제비용	상기이외의 신계약 관련 경비
일반 대리점 수수료	일반손해보험의 대리점 판매채널과 관련
비례수당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점포운영비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업무추진비
장기 대리점 수수료	장기손해보험의 대리점 판매채널과 관련
비례수당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
점포운영비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촉진비
진단비	신계약 모집에 따른 계약자의 건강조사 제비용
인쇄비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
광고선전비	신계약과 관련된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교육훈련비	신계약 모집에 대한 대리점주 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제비용	상기이외의 신계약 관련 경비

<부표 3>

재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급여	부동산,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재산을 관리하는 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이하 재산관리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퇴직급여	퇴직급여채무잔액 및 퇴직급여채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중 재산관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재산관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잡급여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환 또는 일용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여비교통비	재산관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통신비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수도광열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세금과공과	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등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비
도서신문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도서, 신문 구입 및 발간비 등
회의비	재산관리부서의 회의비용 등
지급임차료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및 사용료
수선비	건물 등의 파손·고장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비용
차량유지비	재산관리와 관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자보조금 포함)
보험료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수수료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 유가증권매각수수료, 부동산매각추진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쿨거래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접 대 비	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처 제경비
인 쇄 비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광 고 선 전 비	재산관리를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제비용
조 사 연 구 비	재산관리와 관련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행 사 비	재산관리부서의 사내외의 각종 행사시 지출되는 비용
체 육 진 흥 비	재산관리부서 임·직원의 체력단련에 지출된 비용
교 육 훈 련 비	재산관리부서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전 산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전산관련 제유지비용
대 손 상 각 비	운용자산중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
감 가 상 각 비	재산관리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부동산 감가상각비 중 임대부분 제외)
잡 비	재산관리 사업비중 상기 각 비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비용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전년도 적립한 복구충당부채보다 금년에 적립할 복구충당부채가 증가한 경우 그 차액
복구공사손실	실제발생한 복구공사비용이 복구충당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

<부표 4>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2.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수익증권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미실현된 재측정요소 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5.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대손준비금 등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및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임시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7. 신탁부문 경영성과 공시 등

가.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사모사채 회계처리

사모사채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타대출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삭제 2022.12.23.>

10. 사업비 경험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가. 사업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일반적으로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외적으로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나.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장래 수취 보험료와의 관련성 여부를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이원화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마진(CSM)에 반영하고,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나에 따라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 반영하는 경우 미래 서비스 관련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문서화하며, 매 사업년도 이를 계속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며,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기간은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연 단위 기간으로 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별로 소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가'목 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 '가'목 1호에도 불구하고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의 연단위 기간으로 하거나,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간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회계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최초 적용일(2023.1.1.)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소급법을 적용하여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의 연단위 기간으로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가'목 2호 및 '나'목의 방법을 준용한다.

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지급여력제도에 의해 산출되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 보험부채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이행현금흐름 산출대상계약과 대상계약, 계약의 경계를 일치시킨다.

2) 보험계약대출은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3) 일반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기초가정위험액은 제외한다)에 대해 산출하고,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기초가정위험액은 제외

한다)에 대해 산출한다.

4) 각 위험액에 대한 위험마진 산출을 위한 기대요구자본은 현재시점부터 보험만기까지 필요한 요구자본을 뜻하며, 요구자본은 99.5% 신뢰수준 내에서 지급여력제도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5) 위험마진은 다음의 산식(㉠ 또는 ㉡)에 따라 산출한다. 자본비용률은 각 위험액에 대해 5%를 적용한다.

㉠

$$\text{위험마진} = \text{자본비용률} \cdot \sum_{t \geq 0} \text{기대 요구자본}(t) / (1 + r_{t+1})^{t+1}$$

- r_t : 만기 t인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

㉡

$$\text{위험마진} = \text{자본비용률} \cdot \left\{ \sum (\text{요구자본}(t)) / (1 + r_{t+1})^{t+1} \right\}$$

- $\text{요구자본}(t) = \frac{\text{요구자본}(0)}{\text{현행추정}(0)} \cdot \text{현행추정}(t)$

- 현행추정은 원보험계약의 경우 장래 현금유출액, 재보험계약의 경우 현금유입액만 고려하여 산출

6)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을 구분해야 하며, 운영위험액 관련 위험마진은 원보험계약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라’목의 위험마진을 보험계약집합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비율은 전환일 시점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신뢰수준 99.5%)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때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위험조정 산출시 적용한 대상위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바. ‘라’목의 현행추정부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부표 5> 손해조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급여	손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하 손해조사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정례적(영업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퇴직급여	퇴직급여채무전입액 및 퇴직급여채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 중 손해조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손해조사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잡급여	손해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환 또는 일용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여비교통비	손해조사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통신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통신비
수도광열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세금과공과	손해조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과징금 및 벌과금 등
소모품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비
회의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비용 등
지급임차료	손해조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임차료 및 사용료
차량유지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자보조금 포함)
보험료	손해조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수수료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 o 외부용역수수료, 자문비용, 소송비용 등
인쇄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조사연구비	손해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산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전산비용
감가상각비	손해조사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부동산 감가상각비 중 임대부분 제외)